

2007.6.25(월) 경제정책조정회의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부문별 대책

2007. 6. 25(월)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
산림청

과학기술부
농림부
노동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위
중소기업청

법무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문화재청

- 목 차 -

1. 중소·벤처투자 및 금융 인프라 혁신	1
2. 공장설립·입지제도 개선	7
3. 인력 및 산업안전 제도 개선	17
4. 기업과세 합리화	26
5. 물류 인프라 구축	38
6. 환경규제 개선	41
7. 기타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지원방안	45
8. 기업법제 선진화	53
<별첨>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로드맵	57

1. 중소·벤처 투자 및 금융 인프라 혁신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투자 활성화

① 상호저축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상호저축은행의 투자대상 유가증권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제한
 - 이로인해 벤처특별법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벤처펀드*등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의 출자가 불가능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은 민법상 조합으로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발행주체가 아님
- (개선방안)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하여 일정한도* 내에서는 출자가능토록 허용
(07년 하반기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
 - * 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투자한도(예: 자기자본의 10%) 및 종목별 투자한도(예 : 펀드의 10%) 등 보완장치를 마련

② 보험사 및 은행의 벤처펀드 15%이상 지분소유 금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은행 및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5% 초과 소유 금지
 - * 다만, 금감위가 정하는 업종(은행) 또는 보험업법 시행령상 규정된 자회사 중 금감위가 승인하는 경우(보험)에는 허용
- (개선방안) 은행·보험의 경우 금감위 승인을 얻으면 개별 벤처펀드의 15%이상 지분 소유도 가능하도록 변경
(07년 하반기 보험업법령, 08년 은행법령 개정)

③ 국책은행과 연기금의 벤처펀드 공동출자 프로그램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61개 연기금이 운용중이나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 일부(06년 5개) 연기금만 벤처펀드에 투자중
 - (개선방안) 국책은행이 연기금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동참을 지원하는 방안 추진(07년 하반기)
 - 벤처캐피탈 협회를 통해 참여의사가 있는 연기금을 파악하고
국책은행이 당해 연기금과 협의하여 세부 방안 마련
- * 예) 산은·기은·연기금이 투자한도 및 참여비율 등에 대한 상호
합의를 거쳐 capital call 등의 형태로 연기금이 투자 실행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펀드(1조원) 조성

④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규펀드(1조원)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중기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용도가 높은 기업
위주*여서 창업초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 * 최근 은행들은 신BIS 시행에 대비하는 등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것으로 추정
- (개선방안)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칭
'글로벌스타 육성펀드(1조원)' 신규 조성(산업은행, 07년 하반기)
 - 대출, 출자, 회사채 인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조달비용이 낮은 별도재원(보유 주식 매각 이익 등)을 활용함으로써
대출, 회사채 인수시 우대금리 적용(현행 실행 금리에 비해 최고
1%p 수준 금리 우대)
 - 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 등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선별 지원(창업후 7년미만 기업 우대)

기업의 전문경영인 영입여건 개선

⑤ 전문 경영인의 신·기보 연대 입보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신·기보 보증시 보증부실을 막기위해 경영실권자(전문경영인 포함) 등에 대한 연대입보제를 운영중
 - 사업리스크가 높은 벤처의 특성상 연대 입보 부담으로 벤처기업의 전문경영인 경영문화 확산에 애로
- (개선방안) 연대입보 면제 조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인의 부담 경감(07년 하반기, 신·기보 내부 규정 개정)
 - ① 전문경영인의 입보대상 기준 완화
 - : (현행) 3% → (개선) 5% 미만 주식을 소유하는 CEO
 - ② 연대입보 면제대상 우수벤처기업의 요건 중 재무요건을 1단계 하향조정(향후 추가 확대 검토)

현행 요건	개선	대상기업수
일반기업 : AAA 등급	AA 등급 이상	149개 증가
외감기업 : AA 등급이상	A 등급 이상	101개 증가

⑥ 임원에 대한 금전·실물자산 대여행위 금지의 예외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증권거래법은 임원에 대한 금전 및 실물자산 등의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기업에서는 우수 인력유치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등도 곤란한 것으로 인식
- (개선방안) 우수 인력유치를 위한 복리후생 차원의 주택 대여는 증권거래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님을 확인
(대책발표 후 즉시, 증권거래법 유권해석사항)
 - *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대여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가져올 소지가 없으므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님

중소기업 대출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선진화

7 중소기업 대출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선진화

- (현황 및 문제점) 대내외 여건(환율, 경기 등)과 최근 설비투자 수요를 감안할 때, 중기대출 증가는 바람직한 측면
 - 다만 빠른 증가세는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내재
 - * 중소기업대출 증감율(전년대비 %) : (03)18, (04)2.4 (05)5.2 (06)17.6
 - 또한 최근 일부 중기대출은 기업 운영·설비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구입 등 용도외로 유용된다는 지적
- (개선방안) 신용위험을 줄이고 중기 대출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상환능력에 적절한 만큼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
 - ① ABS를 활성화하여 신용위험 분산(07년 하반기, 자산유동화법 개정)
 - 외부감사를 받은 신탁과 새마을금고의 ABS 발행을 허용
 - 하나의 SPC를 통해 반복적으로 유동화 할 수 있는 포괄 유동화를 허용(현재는 하나의 SPC에서는 유동화가 한번만 가능)
 - ② 업종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이 강화되도록 지원(07년 하반기)
 - * (예) 업종별 전망 정보 : 중기청 등 → 은행연합회 → 은행
 - 업종별 대출·연체율 정보 : 은행연합회 → 은행
 - ③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을 집중 점검하고 중기 대출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점검시기 단축 : 10일→1일) 강화(07년 하반기)

비상장 벤처기업 합병절차 간소화

8] 소규모 합병제도 적용요건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상법상 소규모 합병시, 존속회사의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 * 소규모합병 인정요건 :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을 초과하지 않고, 합병교부금이 순자산의 2% 이하
 - 그러나, 소규모 합병의 인정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유사규모의 기업간 M&A에는 적용이 어려움
- (개선방안)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소규모합병제도 인정요건 완화
 - 신주발행은 발행주식 총수의 5%에서 10%로, 합병교부금은 순자산의 2%에서 5%로 완화(벤처특별법 개정)

9] 간이합병제도 적용요건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상법상 간이합병시, 소멸회사의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여 합병절차 간소화
 - * 간이합병 인정요건 :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 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현행 간이합병제도의 인정요건(의결권 유무와 관계없이 소멸회사 주식 90%이상 소유)은 지나치게 제한적
- (개선방안)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간이합병제도 인정요건 완화
 - 소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0%이상에서 총 발행주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 90%이상으로 완화

10 주식교환 및 합병절차 간소화 적용대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그간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간 부분적 주식교환 허용 및 과세이연, 합병 및 영업양수도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
 - 벤처특별법은 주식교환 및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제도 적용대상을 비상장벤처기업으로 한정하여 적용대상이 협소
- (개선방안) 현행 벤처특별법의 주식교환 및 합병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 적용대상 기업 범위를 현행 비상장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창업기업(설립후 7년미만)으로 확대(벤처특별법 개정)

2. 공장설립·입지제도 개선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1만㎡미만) 설립 원활화

①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 설립의 일반적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관리지역에서 1만㎡미만 소규모 공장설립은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허용토록 제도개선*(05.9월)

* 03.1월부터 난개발방지를 위해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설립을 전면 금지하였으나, 중소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05.9월 다시 허용

- 그러나,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어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설립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

- (개선방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중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설립을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허용

(현행) 법령에서 제한후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Positive방식) →

(개정) 법령에서 허용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통해 금지(Negative 방식)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개정

②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면제

- (현황 및 문제점) 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1만㎡미만) 설립시 계획적 개발을 위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심의안건이 2~3개 있어야 소집되므로, 소규모 공장설립시 많은 시간이 소요

- (개선방안)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개정)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용저수지 상류방향 입지규제 합리화

③ 상수원보호 목적을 위한 개별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상수원보호를 위해 ‘산업입지통합지침’에서 상수원보호구역·취수장 상류방향 일정거리*내 공장설립을 금지
 -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방향 20km(광역상수원)/10km(지역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15km/하류방향 1km 등
- 상수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률의 구체적 근거없이 공장설립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 제기
- 오·폐수를 배출하는 축사, 근린생활시설은 허용하면서 모든 공장(비공해 업종 공장 포함)만을 금지하는 것은, 상수원보호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우면서 공장에만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우려
- (개선방안) 법률상 구체적 근거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비공해 공장에 대한 합리적인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전문기관 연구용역(07.6~08.6월) 실시후 08년까지 마련

④ 농업용저수지 상류방향에서 개별공장 입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05.12월부터 농업용저수지*의 수질보호를 위해 상류방향 5km지역에서는 모든 개별공장의 입지를 금지
 - * 농업용저수지 : 농어촌 용수확보를 위한 농업기반시설로서 전국 17,699개 분포
- 공장이 조밀하게 입지하는 도시지역·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 농업용저수지 상류방향 5km내 모든 공장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 (개선방안)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농업용저수지 상류방향 입지제한 완화(5km→2km, 산업입지통합지침 개정)

수도권 공장입지 관련 규제 현실화

- ⑤ 수도권(성장관리지역)에서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 연장
-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25개 첨단업종 외투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07년말까지 한시허용
 - 외투기업의 투자허용기간이 금년말까지 한정됨에 따라, 투자환경 불확실성으로 지속적인 외국기업 투자유치 곤란
 - 또한, 조성 중인 외국인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공동화 가능성
 - * 화성, 평택 등 22만평 2,660억원 투자(07년~09년)
 - (개선방안) 25개 첨단업종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을 연장 추진(예 : 2010년까지)
- ⑥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예 : 동두천 등) 주변지역에서 61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
 - 61개 업종이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 주력산업(낙농제품제조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특히, 한미FTA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과의 연관효과가 큰 낙농제품제조업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공장 신·증설 불가
 - (개선방안) 경기도 북부지역의 주력산업인 ‘낙농제품제조업’을 공장 신설 특례 업종에 추가(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7]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이전 허용업종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이 허용되는 대기업 업종을 8개로 제한(중소기업은 일반 허용)

《8개 허용업종》

- ①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30013)
- ②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31103)
- ③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32111)
- ④ 전자축전기 제조업(32193)
- ⑤ 유선통신기기 제조업(32201)
- ⑥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32202)
- ⑦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32300)
- ⑧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35310)

- 현행 허용업종은 첨단산업이나, 10대 성장동력 산업 등 미래 유망산업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개선방안) 금년 중 업종 추가여부 및 추가허용 업종에 대한 검토 추진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원활한 지방이전 추진

8]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공장·학교 등)의 원활한 지방이전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공장·학교의 지방이전시 기존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이전비용의 충당이 필요

- 지자체들은 세수감소, 용도변경에 따른 부작용 등을 이유로 지방이전에 비협조이거나, 오히려 새로운 의무부과 또는 규제강화로 지방이전 추진을 저해하는 사례도 발생

* 안양시 D기업 : 경기도 안양시(일반공업지역) 소재 39,000㎡(12,000평) 규모의 공장을 충북 충주로 이전을 추진(08년 하반기 완료계획)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로 기존공장 매각이 어려운 실정

- (개선방안) 일정규모 이상(예 : 3만㎡이상)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이전시, 기업·학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가 중앙정부(전교부 등)와 협의하여 「중전대지 활용계획」을 수립
 - 동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토록 의무화(관계법령 개정)
 - * 법령반영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확정

농어촌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9 시·군별 농공단지 조성 지정면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농공단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시·군별 지정가능 면적을 최대 133만㎡로 제한
 - 기업의 수요가 높은 시·군에서 농공단지 설립제한으로 인하여, 기업이 개별입지하게 되므로 난개발 문제 발생
 - * 07.6월현재 농공단지 조성면적이 100만㎡를 초과한 시·군은 7개 [강원(원주), 충남(예산, 아산, 서산), 전북(김제), 경북(영주), 경남(김해)]
- (개선방안) 기업수요가 높은 농·어촌 지역의 농공단지를 확충하고, FTA 등을 계기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군별 지정한도를 확대(133만㎡→166만㎡, 농공단지 통합지침 개정)

10 농업진흥구역내 농수산물 가공시설 면적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공장 등 다른시설의 입지를 금지하되, 3,000㎡미만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은 허용
 -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규모가 크고 경쟁력있는 농수산물 가공시설 설치가 필요하나, 3,000㎡미만 소규모 시설만 허용되어 경쟁력 유지에 한계
- (개선방안)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설치가능면적을 1만㎡ 미만으로 상향 조정(농지법 시행령 개정)

11 관광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 바닥면적 제한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관광지·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소규모(바닥면적이 660㎡이하) 숙박시설 설치만 허용
 - 이에따라 경쟁력있는 숙박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
- * 최근 전남도에서도 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 설치제한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
- (개선방안)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관광지·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설치가능한 숙박시설 바닥면적 확대(660㎡ → 1,000㎡)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벤처기업 집적시설 관련 규제 개선

12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허용업종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집적이익을 실현하도록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케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지정·운영중
 - 동 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벤처기업이거나, 지식기반산업 4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 * 지식기반산업 4개 업종 :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그러나,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입주기업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
- (개선방안) 첨단지식 산업의 실질적 육성 및 집적시설의 집적화 지원을 위해서 입주업종을 확대(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
- * (기존) 벤처기업 및 지식기반산업 영위기업 →
(추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13 벤처집적시설내 공장등록 면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공장등록은 1,000㎡ (약 300평) 이하만 허용
 - 이는 최근 벤처기업이 제조시설과 R&D기능의 연구소를 보유하여 벤처기업의 공장등록 면적이 증가추세이나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설립·제조물 설치 승인 면제, 공장등록 특례 인정
- (개선방안) 벤처기업 집적시설내 공장등록 가능면적을 2,000㎡ 까지 확대(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

기타 개선과제

14 반월 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내 행위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 설치 사업 추진이 필요
 - 그러나, 당해 도시공원이 산업단지 관리계획상 녹지구역으로 지정(이에 녹지유지에 필요한 관리사무소 등 최소건물만 허용)되어, 도시계획시설 설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
 - 이에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시설로 방치
- (개선방안)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서 분수·운동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15 문화재발굴에 따른 보존지역의 용적률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사업구역내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 박물관 등으로 이전보존하거나 현장에서 원형대로 보존
 - * 이전보존 또는 현장보존 여부는 문화재청이 결정(문화재보호법 제62조)
- 현장보존시 개발이 사후적으로 금지되나 이에대한 보상은 거의 없어, 모두 개발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
- (개선방안) 문화재조사에 따라 사업대상 토지가 일부 보존됨으로서 사업구역이 불가피하게 축소된 경우, 민간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일부 완화(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 도시지역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1~3만㎡ 이상)을 추진할 경우 문화재 발굴지역을 공원 등으로 지정하여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16 산지전용시 '계획상의 도로' 공동사용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산지전용 신규허가(A)시, 이미 허가(B)된 '계획상 도로'의 공동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진입로 개설을 의무화
 - * 이는 B사업이 중단된 경우 A사업이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로 되는 것을 방지하고, 산지전용 기간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토록 하기 위함
- 그러나, 인접 공장의 진입로(계획상의 도로)를 공동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상황에서도 별도의 진입로를 개설토록 하여 낭비를 발생
- (개선방안) 계획상 도로의 사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계획상 도로'의 공동사용 인정(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 * 종전허가자가 산지전용을 완료치 못하는 경우, 종전허가 중 계획상 도로 부분의 허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등 일정조건 충족시

17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사유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공장설립 등을 위해 임업진흥권역 해제를 추진시, 당해 기업이 임업진흥권역의 대체지정지를 마련하여 제공
 - 대체지정지역에 공유림이 포함되는 경우 당해 공유림은 대체지정지로 지정되나, 공유림이 연접하는 경우 대체지정지로 지정되지 못하는 등 대체지정사유가 제한적
- (개선방안) 일정규모(일단의 면적 50ha) 이상의 공유림은 임업진흥권역으로 대체지정 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지 확보를 쉽게 하고, 개발부담을 완화

(기존) 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내에, 공유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확대) 공유림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접하는 경우 및 일단의 면적이 50ha 이상인 경우 대체지정 가능

18 보안림 해제사유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보안림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림 기능을 대체하는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가능
 - 그러나, 보안림 기능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보안림을 해제할 수 없어, 보안림 해제가 사실상 제한
- (개선방안) 보안림 해제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안림 관리요령 개정)
 - ‘보안림 기능을 대체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안림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리화

19 공장설립지원센터의 One-Stop 서비스를 위한 재정지원

- (현황 및 문제점) 06.9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시, “공장설립을 일괄 대행하는 체제” 구축
 - 기존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지위·기능·시스템을 확충하여 공장설립절차를 실질적으로 일괄 대행토록 확대개편
 - 공장설립지원센터가 민원인을 대신하여 각종 공공기관 발행 서류를 On-line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대상 사업자로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추가토록 추진중
 - 그러나, 공장설립 관련 모든 업무를 On-line으로 처리 하는 방안은 재정부족으로 미시행
- (개선방안)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실질적 One-Stop 일괄대행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내 공장설립 민원 행정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배정
 - 08년 : 공장설립 민원행정 온라인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 (09년) 시범구축 → (10년) 전국확대 → (11년) 사업의 안정화

3. 인력 및 산업안전제도 개선

외국인 인력 활용절차 간소화 및 여건개선

① 외국인 고급기술인력을 위한 국적취득절차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외국 고급기술인력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 석·박사급 인력에게 출입국상 특례*를 인정
 - * 첨단정보통신, 첨단제조업, 과학·연구분야에 복수사증 인증 및 체류기간 연장
- 다만, 국적취득시 국적법상 「일반 귀화제도」에 따른 귀화적격 심사(약1년 소요) 및 필기시험 등이 있어 고급인력 유치에 한계
- (개선방안) 외국 고급기술인력이 귀화신청시 귀화적격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 * 예시: 귀화시험에서의 필기시험 면제가능 대상에 고급기술인력을 포함
- 적용대상: 외국 석·박사급 전문인력으로서 국내 기업·연구소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

② 외국인력 도입절차상 전자사증 적용대상 송출국가 확대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07.4월말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선정된 15개국 중 7개국에 대해 전자사증제도를 적용 중
 - *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인력도입에 평균 79.5일 소요(06년 기준)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안하여 외국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할 필요
- (개선방안) 사증발급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전자사증 적용대상 송출국가를 확대 추진

③ 외국인 근로자 출국에 따른 근로공백 최소화

- (현황 및 문제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 3년을 설정(1년마다 갱신)하고 기간만료 후에는 출국할 의무
 - * 법령상 6개월 이후 재입국 가능, 사업주 요구시 1개월 이후로 단축 가능
-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3년후 출국하면, 추가 외국인력이 투입되기 까지 통상 4개월이상 현장공백이 발생해 생산에 차질
- 사업주 요구시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이 가능하나, 외국인 근로자 개인이나 송출국의 내부사정으로 재입국이 불가능한 상황도 빈번
- (개선방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3년) 만료 이전 3월부터 출국예정 인원만큼 고용허가 신청을 허용

⑧ 외국인력 Pool DB 정보에 대한 관리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송출국가에서 외국인근로자가 구직을 신청하면 학력, 경력 등 입증서류를 첨부하고 송출기관이 사실확인 후 접수
 - * 외국인력 정보제공을 위해 인적사항, 희망 취업조건, 이력·경력 관련 정보를 「외국인고용 전산시스템」(EPS, Employment Permit System)으로 관리
- 다만, 국내 기관이 외국인 구직자가 기재한 정보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정확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구직자의 자기소개서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미흡
- (개선방안) 향후 MOU 체결시 외국 송출기관의 구직자 정보확인 의무를 명기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외국인력 자기소개서 등 상세정보 제공을 위해 송출국가어 번역 및 자료전송 등 EPS 시스템을 개발·보완

근로여건 개선 지원강화

⑤ 산업단지내 직장보육시설 지원 요건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사업주(단독 혹은 공동)가 직장보육시설 설치시 고용보험기금에서 시설건립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
 - * 지원요건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당해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보육아동수의 1/3을 초과해야 함
- 자녀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 향후 신규아동 확보가 어렵고, 사업장 제한요건으로 인해 산단내 인근 사업장 자녀가 이용하는데 애로
- (개선방안) 지원요건에 소속 근로자 자녀비율 외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비율을 선택 가능하도록 추가
 - (현행) 소속 피보험자 자녀 1/3 →
 - (개정) 소속 피보험자 자녀 1/3 혹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 1/2

⑥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기숙사 포함

- (현황 및 문제점) 외투기업은 기능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해 기숙사가 원활히 설치·공급되기를 희망*
 - * 경기도 설문조사 결과(06.4월, 대상 : 외투기업을 포함한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 기업환경중 인력채용에 가장 큰 애로(40.6%)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기숙사 구비, 대중교통 편리성이 인력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응답
 - 그러나, 기숙사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외국인을 위한 학교, 병원, 주택 등)'에서 제외되어 기숙사 건립사업 활성화에 한계
- (개선방안) 기숙사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범위에 포함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4호 개정)

청년 고용 애로요건 완화

7] 중소기업 재직 공고 졸업생에 대한 입영연기기간 연장

- (현황 및 문제점) 중기청은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시행중으로,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협약 취업기간 2년간 입영연기를 할 수 있음

* 중소기업-공고-학부모간 취업협약을 체결,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공고생(3학년)에게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 후, 졸업과 동시에 2년간 협약취업

-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취업기피, 실업계 고교 비중 감소로 인한 기능인력 감소 등 문제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볼 때, 인력난 완화를 위해 입영 연기기간을 연장할 필요

- (개선방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고 졸업생이 희망시, 입영 예정일로부터 2년(총4년) 범위내에서 추가로 입영연기를 허용

8] 청년 실업자 대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시행기간 연장

- (현황 및 문제점) 청년 실업자의 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시행중 (07.9월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

*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29세이하인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후 12월간 매월 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 현재 청년 실업률이 7~8%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도 높은 상황에서 장려금 지원을 중단할 경우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중될 우려

- (개선방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시행기간을 '10년까지 연장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확충

9]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해외자원 개발 사업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국내 전문기술인력은 부족한 실정
 - * 05년 국내 자원개발 전문인력은 540명으로, 중국 국영석유회사나 세계 50위권 석유회사인 Anadarko사(3,800명), 일본의 3,000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
- '16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3,880명*의 신규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력확보에 애로 발생 전망
 - * 석유·가스분야 2,500명, 일반 광물분야 1,380명 (산자부 전망)
- (개선방안)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지정 및 자원개발 분야 자격제도 (기사·기술사) 신설 검토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도모
- 해외자원개발 기업·연구소에 대한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인력요원 우대배정 등 병역특례를 확대

산업안전 제도의 개선

10] 산재승인 결정시 근로자의 과거 상병에 대한 관리개선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는 업무상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로 승인받음
- 다만, 산재상병 입력시 과거 상병과의 연계 미흡*으로, 불승인 상병이 추가로 산재승인을 받는 사례가 발생
 - * 현재 노동부의 노동보험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과거 상병을 확인할 수 있으나 '95년 이전의 경우 전산입력이 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
- 또한 근로자가 추가상병 신청시 사업주 의견이 미반영

- (개선방안) 금년중 요양중인 산재환자의 과거 전체 상병자료를 입력하여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근로자의 추가상병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제출의견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면 반영·처리

11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산업안전 성능검사 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제작·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산업안전공단 시행)
- 이때 구조검사를 위해 제품을 분해하여 검사하고 있어, 석유화학 관련 제품 등 정밀기계는 검사후 문제가 발생
- (개선방안) 제품 검사시 해당 제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업체 직원의 입회를 허용

12 산재예방기관 운영에 대한 사업주 참여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산업안전공단의 운영비·사업비는 대부분 사업주가 부담(산재보험료)하나 사업주 단체의 공단업무 참여는 매우 제한적

【참고】 산업안전공단 이사회(최고 심의·의결기구) 구성
 · 12인: 공단 4인(이사장, 이사), 노동계 1인(한노총), 경영계 1인(경총), 학계 2인(안전·의학), 정부 3인, 감사 1인

- 이사회는 정부·공단 관계자가 과반수이상 참여하고, 노사의 참여는 비상근이사 각 1명에 불과해 노사의 의견반영이 미흡
- * 더구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상근이사가 ‘이사장 추천→노동부장관 임명’으로 되어 있어, 사업주는 정부·공단사업과 예산집행을 추진하는 역할에 불과
- (개선방안) 금년중 노사대표 중 비상임 이사의 수를 확대

13 CLEAN 사업의 「지역별 목표할당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CLEAN사업은 안전조치와 작업환경 개선이 어려운 소규모사업장(50인미만)을 대상으로한 재해예방 사업
 - 현재 각 지역의 사업대상 물량, 과거 사업참여 및 지원실적 추이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 목표물량을 배분(지역별 목표할당제)
 - * 지역별 유해·위험사업장의 특성에 맞추어 지원하는 동시에, 연간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간 신청대비 지원물량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
 - 지역별로 물량이 나뉘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지원이 집중되지 못하는 측면(사업 효율성 저하)
- (개선방안) 지역별 목표할당제를 보완하여 유해성과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재원을 우선 지원(「우선지원 대상사업장」 선정기준 개선)

기타 개선과제

14 외국인근로자 사후관리 개선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처리 및 상담을 위해 노동부는 수도권에 민관합동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3개소를 운영중
 - 다만, 전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국내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외국문화 교육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문화 교육이 미흡한 실정
- (개선방안) 08년도에 지방 소재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추가 설립을 추진

15 장기 재직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5년이상 재직 근로자 대상 주택특별공급 제도를 운영중
 - * 특별공급 동일순위(4순위)에 있는 공무원, 군인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대
- 그러나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장기재직자가 대상이라는 점, 4순위에 불과한 구조적 한계, 홍보 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낮음
- (개선방안) 주택 특별공급 추천시 他직종보다 장기 재직 기술·기능인력을 우대 (중기청 고시 개정)

16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 사업 지원대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인력구조의 고도화 (예: 노무직→기능직→기술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05년부터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을 시행중(중기청)
 -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회원 중소기업의 공동인력 채용 및 인적자원 관리, 교육훈련 등을 패키지로 지원(06년 20개 조합을 통해 4,414개 업체 11,361명의 근로자 참여)
- 중소기업 전반의 인력구조 고도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지원대상을 협동조합에 한정함으로써 인해 사업의 파급효과가 제한
 - *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일본은 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개선방안)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 사업 지원대상에 업종별 단체 및 협회를 추가

17 구직자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정보제공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노동부는 구직자들에게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중
 - * 노동부는 워크넷을 통해 채용 희망기업이 제시한 근로조건, 기업규모 등 정보를 제공중
 - 다만, 임금과 복지 수준, 기업비전과 성장가능성 등 구직자가 기업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는 미흡
- (개선방안) 07년에 「임금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임금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08년 상반기 시범운영→ 하반기 본격 가동)

4. 기업과세 합리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산학협력단을 통한 「대학기술의 산업화」 지원】

① 기술지주회사의 배당수익금액 익금불산입율 상향조정

- (현황 및 문제점) 지주회사는 일반법인에 비해 법인간 배당시 익금불산입 비율이 높으나
 -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일반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어 여타 지주회사에 비해 불리

<법인간 배당시 익금불산입율(비상장법인)>

모회사 자회사	지주회사		일반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비상장법인의 경우	100%	100%	100%	100%
	80%~100%미만	90%(09이후100%)	50%~100%미만	50%
	50%~80%이하	60%(08이후 80%)		
	50%이하	30%	50%이하	30%

- (개선방안) 기술지주회사의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범위를 여타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②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대학교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 (현황 및 문제점) 대학이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이나
 - 사실상 대학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과세

- (개선방안)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도 비과세하여 대학인력의 연구개발활동 지원

③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주식소유한도 예외 인정

- (현황 및 문제점) 공익법인의 과도한 계열기업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주식의 5%를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 이 제도가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도 적용됨에 따라 대학기술 산업화 저해요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주식을 5%초과 보유시에도 증여세 부과 면제

* (예시) ①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할 것,
 ②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 기술지주회사 주식의 50% 이상일 것,
 ③ 기술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다른 회사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것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④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펀드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 (현황 및 문제점) 투자자가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07.1월 벤처기업특별법을 개정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주식 취득을 허용하였으나 이 경우에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 (개선방안) 母조합과 자조합이 모두 도관(pass-through entity) 성격이 있음을 감안하여 벤처투자조합 (母조합)의 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발생 후 4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창업 초기 벤처확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

* (예시) : 벤처투자기관이 기업 자본금의 10%이상 투자하고, 투자금액이 최소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것 등

- (개선방안)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간을 창업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여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

⑥ 벤처 창업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벤처·지식산업의 발달로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는 중소규모 인적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이를 반영하여 상법개정을 통해 새로운 인적회사 형태의 기업인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의 도입이 추진 중이나
- 이에 부합하는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의 원활한 설립이나 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개선방안)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합명·합자회사, 조합 등에 대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

- 파트너십 과세제도 :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하여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구성원인 파트너에게 배분하여 과세

* 상법이 개정되어 유한책임회사 및 합자조합 형태의 기업이 도입되는 경우 이를 파트너십과세제도 적용대상에 포함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산업 지원】

7 항공화물 유치 활성화를 위한 재수출 면세 대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공항시설이 부족한 중국 청도 등의 항공화물을 인천공항으로 유치하기 위해 RFS 도입 필요
 - * RFS(Road Feeder Service) : 타지역 항공화물을 트럭을 통해 공항까지 운반하여 항공기로 환적수송하는 서비스(예 : 중국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여 트럭채로 선박으로 이동 후 동 트럭이 직접 인천공항까지 운송하여 비행기에 환적)
- 현재 인천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환적하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RFS도입이 곤란
- (개선방안) RFS 도입확대를 통한 항공화물 유치활성화를 위해 재수출면세 대상에 「반송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추가

8 관세 가격신고제도 간소화를 통한 물류흐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가격신고제도는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의 산정 근거를 신고하는 것으로 수입시 건별로 신고토록 규정
 - 소액물품 및 동일조건외 동일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매 건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
- (개선방안) 소액신고물품(1만불이하)의 경우 가격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조건외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기적(예 : 1년)가격신고를 허용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부담 경감】

9]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범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 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하여 관세 감면제도 운용중

* 감면대상 - 505개 품목, 감면율 - 30% (중소기업 50%)

-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부품목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특정 품목의 경우 규격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와 과세 관청간 혼선 야기

- (개선방안) 단순기능 자동회편기* 등을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단조기** 등 20개 품목의 규격을 명확화

* 자동회편기 : 스웨터 등의 무늬를 넣으며 옷을 짤 수 있는 기계

** 단조기 :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태로 만드는 기계

10] 연구개발용품 관세 감면 범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수입하는 연구개발용품 중 재경부령으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 해당 관세액의 80%를 감면하는 제도 운용중

- 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대상물품 확대 필요

- (개선방안) 하이브리드 기술, 오존발생 기술 등의 개발에 필수적인 연구개발물품*을 감면대상에 추가

* 오존발생기, 압연기, 전기방사장치 등 47개 품목

11 유상으로 일시수입되는 금형에 대한 관세 면제

- (현황 및 문제점)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금형을 수입하여 일시사용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무상으로 수입되는 금형에 한해 관세 면제
 - 일본, 중국 등은 제품 생산용으로 생산자에게 유상으로 공급되는 금형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고 있어 자체상표 제품의 국내 생산이 해외로 이탈할 우려
- (개선방안) 관세면제 지원을 유상인 경우까지 확대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과세제도 개선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 지원】

12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서비스 비용 손금산입

- (현황 및 문제점)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금융차입을 위해 지급한 보증료의 경우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
- (개선방안)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모회사의 익금에 산입된 경우
 - 모회사가 보증기관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를 대응손비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

13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허용

- (현황 및 문제점) 국내모기업이 해외자회사를 위해 채무보증을 하고 대위변제하는 경우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 (개선방안)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를 위해 채무보증을 하고 대위변제시 취득하는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산입 허용

* (예시) : ①해외자회사 설립후 3년이내에 보증할 것 ②해외자회사가 명목회사가 아닐 것 ③ 보증수수료를 국조법 제4조에 따라 국내모회사에 익금산입할 것 ④주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대위변제일 것

14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 자회사의 지분비율 요건이 20%인 반면,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경우에는 25%로 차등규정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손금산입하는 제도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방법 요약표 >

조약여부	조세조약 규정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이 없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분율	공제비율	지분율	공제비율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	100%	-	50%	

- (개선방안) 조세조약미체결국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 해외 자회사의 범위를 확대(2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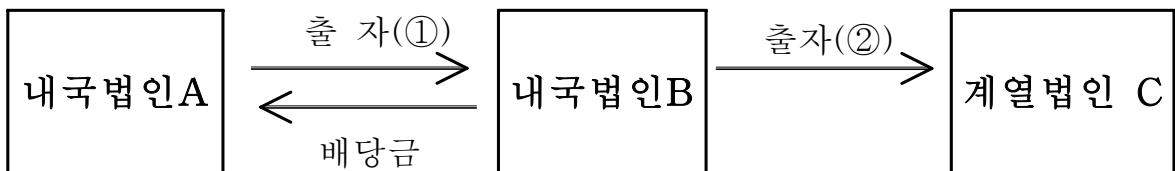
15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 (현황 및 문제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29개 업종에 대해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7%) 적용 대상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업체에 한정하여 운용
- (개선방안)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업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 허용

【이중과세 조정 등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16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열회사 범위 축소

- (현황 및 문제점) A법인과 C법인이 계열회사인 경우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 A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



*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비율) ×

$$\frac{\text{배당지급법인이 계열법인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text{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 A법인이 비계열회사인 B법인에 투자하고 B법인이 일반투자로서 비계열회사인 C법인에 출자한 경우 A법인이 C법인에 대한 지배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 발생

- (개선방안) 과세(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출자법인(A), 배당법인(B), 배당법인이 재출자한 법인(C)이 모두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

17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전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 (현황 및 문제점) 현재는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물품을 면세사업에 전용(專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의 경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이중과세되는 측면
- (개선방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18 하자물품 보세공장 재반입시 관세 환급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보세공장에서 만들어진 물품이 하자가 있어 수리를 하는 경우 최초수입신고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 환급
 - 보세공장에서 수입된 하자물품을 타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리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 발생
- (개선방안)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경우 최초 수입신고한 보세공장이 아닌 다른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 환급허용

19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에 대한 투자손실 인정 범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세법상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감액손실 인정
 -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감액사유 : 「파산」, 「부도」, 「회생계획인가 결정」,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감액사유 : 「파산」
 -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합리
- (개선방안)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하여 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액손실 인정

세제 간소화 등 납세자 편의 제고

【세제간소화】

20 사업자등록 법정처리기간 단축

- (현황 및 문제점) 주식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22일중 사업자등록에 8일*이 소요되어 신속한 법인설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 사업자등록 법정처리기간 7일 + 찾아가는 날 1일(세계은행 보고서)
- (개선방안) 사업자등록 법정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

21 「보세공장 원료과세」 신청절차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보세공장이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완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 통상 완제품의 관세율이 원재료의 관세율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사전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율로 과세
 - 현행 원료과세 제도는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활용실적이 저조(대기업: 10% 수준, 중소기업: 활용 미미)
- * ① 반입시 “건별로 미리 원료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하고
② “대상 원재료를 별도로 관리”하는 한편,
③ “이중 검사”(적용신청서와 원재료 사용신고서) 등의 부담 발생
- (개선방안) 원료과세제도 적용신청을 건별이 아닌 일정기간별(예: 1 회계년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재료 사용내역은 사후에 서면관리하도록 제도 개선

22 법인세 신고기한의 단순화

- (현황 및 문제점) 법인세 신고기한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로 규정
 - 월중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유동화 전문회사(SPC) 등 일부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을 혼동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 발생
- (개선방안) 법인세 신고기한을 「사업연도종료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
 - 월중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법인의 신고기한과 일치시켜 납세편의 제고

㉓ 특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절차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특별소비세 총괄납부 신청일로부터 지방국세청장이 30일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 (개선방안) 특별소비세 총괄납부를 세무서장이 20일이내에 승인하도록 승인권자와 기간 조정
 - * 특별소비세 총괄납부제도 : 특별소비세를 여러 군데의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자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치】

㉔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수용

- (현황 및 문제점) 현재는 건설자금이자를 건설중인 자산의 원가에 반영하고 추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도록 강제
 - * 건설자금이자 :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
- 특정 차입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선택적으로 당기비용화할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과도 불일치
- (개선방안)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여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당기비용처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5. 물류 인프라 구축

① 모듈 트레일러의 운행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총중량 화물 운송을 위해 특수제작된 모듈 트레일러의 등록이 허용되지 않아 도로 운행이 불가

** 자동차안전기준 규칙(건교부령): 폭 2.5m, 총중량 40톤 등으로 자동차 크기 제한

- 조선 및 대형 구조물 운송은 모듈 트레일러로만 가능하여 항만 주변 등에서 불가피하게 불법 수송이 이루어짐
- (개선방안) 07년말까지 모듈 트레일러의 운행방안을 마련하고 08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조속히 모듈 트레일러의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하도록 추진

② 물류시설 캐노피에 대한 규제 합리화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건축법상 물류센터(창고)의 건축면적 계산시 캐노피(돌출차양)의 면적을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 산입기준이 비율(건축면적 10%초과) 기준으로 됨에 따라 건축면적이 작은 일부 중소 물류센터의 경우,
 - 건폐율 한도를 맞추기 위해 캐노피를 줄이거나 없애야 해서 우천시 물품 상·하차 작업이 어려운 실정
- (개선방안) 캐노피의 건축면적 산입시 정량(3m) 기준과 비율(건축면적 10% 초과) 기준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③ 항만공사 사업용토지 보유세경감을 통한 물류비용 증가요인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항만공사의 사업용토지(방과제, 화물터미널 등)에 대해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1.6% 종합부동산세 부과

* 항만공사 : 정부에서 100% 현물출자(부산 : 3.1조원, 인천 : 2조원)

** 종합부동산세 추정액 : (07년)115억원 → (08년) 231억원 → (09년) 257억원

- 사회간접시설인 항만시설에 대한 중부세 부과가 예상됨에 따라 항만시설사용료 인상 등을 초래하여 물류경쟁력 약화가 예상

- (개선방안) 인천, 부산에 항만공사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감면조례로 보유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

- 울산 등지에 항만공사가 추가 설립시에는 지방세법시행령에 반영(분리과세대상)하는 방안도 강구

④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절차 합리화

- (현황 및 문제점) 선박용물건에 대한 형식승인을 얻고자 할 때 반드시 지정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함

- 현재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아 합격한 선박용 물건도 다시 국내 지정기관의 동일한 시험을 받아야 하는 실정

- (개선방안)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따라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시험 면제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에관한규칙 개정)

⑤ 항만하역 작업시 정시간외 물품취급통보 의무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현행법상 공항만에서 정상 근무시간 외에 하역작업 등을 할 경우 감시목적상 미리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 통상 하역작업은 오전 8시부터 시작되므로 매년 정시간외 물품취급 통보를 해야 하는 실정
 - 한편, 세관의 감시부서가 CCTV 등을 통해 24시간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통보의 실익이 낮음
- (개선방안) 항만 하역작업시 정시간외 물품취급통보 의무 폐지
 - 항만에서 선박으로의 선적이나 하역작업의 경우는 세관장에 대한 통보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⑥ 인천공항물류단지의 차량통행 규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인천국제공항내 자유무역지역 통행차량은 모두 출입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임시·일회성 통행 차량들의 경우 출입증 발급과 반납 등의 절차로 인해 통행 불편과 교통 혼잡 초래
- (개선방안) 출입증 없이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할 수 있는 범위를 월5회→월9회까지로 확대하고, 회수절차를 간소화
(인천국제공항공사 내규 개정)

6. 환경규제 개선

① 반도체 기존공장의 구리공정 전환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반도체산업의 구리 공정 도입 추세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이천 하이닉스 공장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구리 공정* 전환 필요

* 메모리 반도체로 초고밀도(50나노급 이하, 현행은 60나노급) 반도체 제조시 구리공정 필요(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구리공정 기도입)

- 이천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가 제한 (사용 공정 전환 포함)

* 특정수질유해물질 : 구리, 납, 비소, 카드뮴, 6가크롬 등 19종(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 (개선방안) 동 사안의 처리방안에 대해 환경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 발표 예정

②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는 연료별·차종별 농도규제방식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의 제작·판매는 원천적으로 금지

- 위와 같은 규제방식은 차종별 시장여건 및 생산중단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달성시 인센티브가 없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유인체계 부재

- (개선방안) 자동차 제작사에 시장여건에 따른 생산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배출허용기준 관련 과징금 및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배출량 제도(FAS)* 도입

* FAS (Fleet Average Standard) : 제작사에게 다양한 배출허용기준을 허용하여 유연성을 부여하되, 제작사는 전체 자사 판매차량의 배출량 평균이 평균배출량 기준을 충족해야 함

③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오염 부하요인이 큰 경유차에 반기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
 -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시 '06년 이후 강화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따른 환경오염부하 감소요인이 미반영되어 현 제도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실현에 미흡
- (개선방안) 06년이후 강화된 경유차배출허용기준(Euro-4)을 반영하여, 연구용역(~07.6말)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

④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기물을 ① 직접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②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공제조합)에 가입, 분담금을 납부하여 재활용의무 이행

- * 정부는 품목별, 포장재별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법령상 복수설립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시 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등 서류 작성·제출을 공제조합이 대행
- 위탁기관은 서류작성·제출을 대행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생산자의 공제조합 가입을 유도하며, 공제조합이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
- (개선방안) 서류 작성·제출 관련, 위탁기관 및 공제조합간의 실질적 차이를 제거하고, '07년 3/4분기 중 용역결과(EPR제도 개선방안) 및 공정거래질서를 감안하여 개선방안 마련

⑤ 건설폐기물 처리 신고 중복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사업장에서 발생·배출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되나, 건설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폐법)에 의거 재활용·처리
- 폐석고보드, 폐타일, 도자기류 등은 주로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나 건설폐기물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폐기물관리법 및 건폐법상 신고 부담이 이중으로 발생
- (개선방안)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폐석고보드 등을 추가하여 사업자의 이중 신고 부담 완화

⑥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요구되는 배출허용기준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실제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 50% 이하, 황산화물 60% 이하, 질소산화물 70% 이하의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충족해야 함
 -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효율과 여유율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
- (개선방안)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요구되는 배출허용기준(지정요건) 합리화
 - 황산화물은 60% 이하 → 80% 이하, 질소산화물은 70%이하 → 90% 이하로 조정

7. 기타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지원방안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기간 연장

- (현황 및 문제점) 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면제(조특법 제119조 및 120조)
 - 그러나, 창업자는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2년안에 공장설립 등을 완료하기 어려워, 취득세·등록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
- * 산집법(13조의5)은 이를 감안하여 4년이내 공장설립을 완료토록 하고 있음
- 특히, 영세창업기업은 초기에 임차공장으로 운영하고 창업 3~4년 이후 자가공장을 취득하므로 영세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못 받는 형평성 문제 발생
- * 자가공장 확보율(중기중앙회, %) : (1년)17.4→(2년)38.5→(3년)37.1→(4년)49.6→(5년)51.9
- (개선방안)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등록세 감면기간을 4년으로 확대

② 전남 대불산업단지내 전기의 순간정전 방지

- (현황 및 문제점) 대불산업단지에서 매년 10회이상 순간정전이 발생하여 제품의 불량률이 급격히 증가
 - 일부 기업은 전체 공장가동이 중단되어 막대한 작업손실 발생
- * 대불산업단지내 순간정전 현황(대불산단내 K기업 제출자료) :
(02년) 9회 → (03년) 9회 → (04년) 10회 → (05년) 26회 → (06년) 13회
- (개선방안) 한전에서 대불산업단지에 대한 순간정전 발생빈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전선로 준공 등 조치
 - 한전은 건설중인 송전선로를 적기에 준공(08.1월)하고, 대불공단의 송전선로에 피뢰기 조기 설치(08년중)

③ 기업의 자연재해 대비 시스템 구축방안 강구

- (현황 및 문제점) 기업의 공장건물·기계설비 등도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

* 중소기업 자연재해 피해액(억원) : (03) 9,106 → (04)1,277 → (05)2,395 → (06) 1,132

- 일부 기업은 민간보험(풍수해특약)을 가입하고 있으나 보상규모가 작고(피해규모 대비 2~17% 수준), 피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원천적으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활성화되는데 한계

- (개선방안) 공장건물·기계설비 등도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07년 하반기 관계부처(예산처, 소방방재청, 중기청)에서 공동 연구용역 실시

④ 불합리한 수돗물 공급조건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일부 지자체가 공급하는 수돗물 대가기준(조례로 규정)이 사용량 기준으로 부과하지 않아 수익자부담원칙에 반하며, 기업에 부담 초래하는 사례 발생

* <사례> A시의 경우 전용공업용수 급수량을 신청(A시 수도급수조례) 하도록 하고 계약량을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할증 요금을 부과하되, 계약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량분의 요금을 부과

- (개선방안) 수자원공사의 요금체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돗물 가격을 산정하도록 조례 개정을 유도

5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에 대한 출총제 예외 인정

- (현황 및 문제점)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내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환거래, 노동 등의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부여
 - 외국기업의 경우 투자결정시 국내 대기업·중핵기업과의 입지적 연계, 전후방 연관업체의 접근성을 중요시하나
 - 출총제 제한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대기업의 입주가 제한되어, 외투기업 유치에 애로요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정)

6 기술우위 SW 개발자 우대를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SW사업시 과도한 저가입찰을 막고, 기술우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점수(80%), 가격점수(20%)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이에 덤핑입찰의 사례는 감소하였으나, 제안가의 하한을 60%까지 허용함으로써 여전히 가격이 낙찰에 큰 영향
 - (개선방안) 가격보다는 기술우위자가 선정되도록 낙찰자 선정 방식 개선
 - 일차적으로 기술평가만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 * 제안서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예: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7 SW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SW 개발비 산정시 주요 기준으로 사용하는 SW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 등급 및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규정
 - 이에 SW 기술자의 전문성, 직무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는데 미흡
- (개선방안) SW 기술자의 전문성, 직무수행 경험 등을 종합 판단할 수 있는 등급분류 체계 개발 추진(중장기)
 - SW기술인력의 단계별 교육과정 체계화(07년)
 - SW기술자 신고 제도 도입 및 「SW기술자 경력증」 발급 추진(08년)
 - SW기술분야별 실무 중심으로 자격종목 개편을 추진(09년이후) 하고, 이를 토대로 SW기술자 등급분류 체계 개발(10년이후)

8 윈도우 비스타 문제해결 비용의 과도한 IT업계 전가 방지

- (현황 및 문제점) 윈도우 비스타 출시로 기존 윈도우 환경에서 이루어졌던 전자정부 등 각종 공공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
 - 서비스 장애를 막기 위한 작업(유지보수작업 : 호환성 작업과 테스트 비용 등)에 초기 개발비용의 70%까지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모든 비용을 S/W 개발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
- (개선방안) 윈도우 비스타 호환성 작업은 유지보수 대상으로 무상이 원칙
 - 다만,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현행 SW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판단

9]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시 면허세 비과세

- (현황 및 문제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시·도지사에게 하고, 신고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 통신판매업 신고시마다 면허세(수시분)를 납부(건당 45,000원)
 - 인터넷 서버변경, 상호·주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어 신고하는 경우에도 면허세가 부과되어, 사업운영비 부담 증가
- (개선방안) 상호, 서버 변경 등 면허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변경 사항에 대해 면허세 비과세 추진(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

10] 중소기업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R&D 자금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경쟁력이 저하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
 - * 사업전환지원 : 자금지원(07년 1,000억원), 컨설팅자금(07년 10억원) 등
 -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품개발을 위한 R&D자금 지원을 많이 희망하나 이에 대한 지원은 없는 실정
- (개선방안) 사업전환 승인기업 대상, 전환업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품개발에 필요한 R&D 지원
 - 07년 시범사업추진(30억원)후 성과를 분석하여 점차 확대

1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설연구소 설립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개별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은 가능하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부설연구소 설립이 제한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15조 1항 1호

- 이에 자체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한 개별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하는데 어려움

- (개선방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설연구소 설립 허용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개정)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조정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당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한 악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중기청의 '사업조정제도'에 의해 대·중소기업간 이해 조정

-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계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사업조정에 어려움

- (개선방안) 사업조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07 하반기)

- 연구용역을 통해 외국사례 등을 검토하여 사업조정 신청요건, 조정절차, 조정명령의 내용 등 제도 개선방안을 08년까지 마련

*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제도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대기업-중소기업'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해 사업조정제도는 필요

13 컨설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연계시스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도록, 쿠폰제 컨설팅지원사업을 추진중
 - 그러나, 컨설팅 결과로 나타난 개선과제와 실행계획을 현장경영에 후속지원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컨설팅의 효과에도 한계
- (개선방안) 쿠폰제 컨설팅사업과 다른 정책간 연계 운영
 - 우선 컨설팅사업과 중소기업청 소관사업(자금지원, 기술지원 등)과 연계 후, 타부처 사업으로 확대 추진
 - 중소기업의 컨설팅 애로상담 및 지원을 위해 지방중기청에 「지역별 컨설팅 애로상담창구」 및 연계지원센터 설치·운영

14 KS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비용 부담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KS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최고경영자, 직원 등이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음
 - * KS 인증 심사시에 교육이수 여부가 평가항목이므로, 업체는 관련 교육 이수가 필요(교육점수 반영비율 6점/100점, 80점 이상이면 합격)
 - 산업표준화법에서는 해당 교육을 한국표준협회 1개 기관에만 위탁하고 있어 기업의 교육 선택 기회가 제약되고 있음
 - 또한 일부 과정은 교육비가 비싸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 * 표준협회 교육비용(예) : (하계CEO포럼) 260만원, (CEO품질포럼)150~170만원
- (개선방안)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련 교육 시행 기관을 확대하여 KS 관련 교육비 부담완화를 유도

15 기술이전(정부연구소→기업)시 경상기술료 방식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기업-연구소간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은 연구소에 귀속하며, 참여기업은 비용(기술료)을 지급하고 기술이전을 받음
 - 기술료 지불조건은 선금금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등이 있음
- (개선방안) 이전기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이전시 기술료 지불방식으로 '경상기술료 방식' 활성화 유도
 - 기술이전 방식·업무에 대한 지침으로서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식'을 제작하여 대학·연구소에 배포
 - 경상기술료 활성화를 위한 경상기술료 산정, 징수 등을 대행하는 '라이센싱 매니지먼트' 사업을 시범 실시

16 기업이 R&D과제를 위한 신규인력 채용시 내부인건비 지급 기준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외부인건비는 지원하나, 내부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 외부인건비 : 외부연구인력에 대한 비용
 - ** 내부인건비 : 자체 고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 기업이 R&D 과제추진을 위해 신규기술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내부인건비 지급이 불분명하여 각 기관마다 내부인건비 지급여부가 상이
- (개선방안) 기업이 해당 R&D 과제추진을 위해 신규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내부인건비 지급기준 명확화 (과기부에서 기준 명확화)

8. 기업법제 선진화

- ◇ 포괄적 동산담보제, 저당권유동화 등 1단계대책시 발굴된 과제는 법무부 기업법제 개선팀 및 과제팀 T/F를 통해 도입방안을 추진중이며
- ◇ 금번 2단계 대책에서는 도산·신탁·담보 관련 과제를 선진화과제로 추가

도산법제 선진화

1] 도산절차상 신규지원자금에 대한 우선순위 인정

- (현황 및 문제점) 통합도산법상 신규지원자금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만,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 까지 우선순위가 인정되지는 않음
 - 신규자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순위(Super priority)를 부여함으로써 신규자금 유입을 촉진할 필요
- (개선방안) 기업회생에 있어서의 신규자금 유입의 중요성을 고려, 신규지원자금에 대해 회생담보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담보권을 인정

2]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 Rule)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통합도산법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
 - * 파산시의 분배 몫 이상을 보장하는 원칙으로서 청산가치 만큼은 우선 순위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몫을 결정하고,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계속 기업 가치는 종전과 같이 협상에 의해 몫을 결정
 - 채권자간 및 채권자·주주간 협상 기간 등으로 인해 절차 지연이 초래되고, 후순위채권자 및 주주의 “버티기(hold-out)” 가능성 존재
- (개선방안) 통합도산법상 절대우선원칙 도입

③ 자동중지제도 (Automatic Stay)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자동중지제도는 도산절차 신청 즉시 별도절차 없이 모든 채권 행사를 자동적으로 금지·중지시키는 제도
 - 통합도산법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산절차 신청후 보전처분 명령까지의 기간 단축(14일→7일), 포괄적 금지명령제도 도입 등을 통해 보완 (법 제45~47조)
 - 자동중지제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보전처분 명령시까지 경쟁적인 채권회수, 임의변제, 재산유출 등으로 인해 회생가능성 저하 및 채권자간 공정성 침해 위험 상존
- (개선방안) 자동중지제도 도입

신탁법제 선진화

④ 신탁법상 신탁대상을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신탁법은 신탁대상을 금전, 유가증권, 토지, 지상권, 무채재산권 등 제한적으로 열거
 - 신탁대상 제한에 따라 신탁제도의 탄력적 활용이 곤란하고, 새로운 유형의 신탁상품 개발을 저해
- (개선방안)일본 등과 같이 신탁대상을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여 확대

5 수탁자의 자기집행 원칙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신탁법은 신탁사무를 수탁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3자 위임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 신탁재산 사무처리가 복잡화·전문화됨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사무 일체를 처리하기는 곤란하고 효율성도 떨어짐
- (개선방안)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전제로 수탁자의 자기집행의 원칙*을 폐지

* 미국의 통일신탁법전(Uniform Trust Code)은 자기집행의무를 폐지

6 복수 수익자간 이해상충 해결규정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신탁법은 다수 당사자간 집단적 신탁 관계를 예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집단적 신탁관계에 있어서의 복수 수익자간 이행상충 문제에 관해서는 규정이 미비(분쟁발생시 많은 비용 소요)
- (개선방안) 집단적 신탁관계에 있어서 복수 수익자간의 이해 관계규율 규정 도입

담보제도 개선

7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담보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마땅한 공시방법이 없어 담보설정시 양도담보를 이용

- 그러나, 건축중인 건물은 공사 초기에는 동산으로 인정되나, 기성고가 증가하여 기등·지붕 및 주벽이 이루어지면 부동산으로 인정*되어 양도담보권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
- *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는 공사 초기에는 동산 양도담보권자로 보호되나, 건물의 기성고가 증가하여 부동산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등기에 의해 공시되어야 하는 바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선변제권의 주장이 불가
- 이에, 양도담보권자의 지위가 불안하므로 금융기관은 건축중인 건물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거나,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
- (개선방안)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저당권 등기제도 도입
 - 건조중인 선박과 같이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저당권 등기제 도입 (부동산등기법령 개정)

【별첨】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로드맵

정책 과제	시행기한		
	단기과제(07년)	중기과제(08년)	장기과제(09년)
I. 중소기업투자 및 금융 인프라 혁신(10개)			
1. 상호저축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허용			
2. 보험사 및 은행의 벤처펀드 15%이상 지분소유 금지완화			
3. 국책은행과 중소기업금의 벤처펀드 공동출자 프로그램 마련			
4.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규펀드(1조원) 조성			
5. 전문 경영인의 신·기보 연대 입보 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부담을 경감			
6. 임원에 대한 금전·실물자산 대여 행위 금지의 예외 명확화			
7. 중소기업 대출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선진화			
8. 소규모 합병제도 적용요건 완화			
9. 간이합병제도 적용요건 완화			
10. 주식교환 및 합병절차 간소화 적용대상 확대			
II. 공장설립 및 입지제도 개선(19개)			

1.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 설립의 일반적 허용			
2.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3. 상수원보호를 위한 개별공장 입지구제 합리화 추진			
4. 농업용저수지 상류방향에서 개별공장입지 완화			
5. 수도권(성장관리지역)에서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 연장			
6.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 확대			
7.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이전 허용 업종 확대			
8.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원활한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추진			
9. 시·군별 농공단지 조성 지정면적 확대			
10. 농업진흥구역내 농수산물 가공시설 면적제한 완화			
11. 관광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 보호구역내 숙박시설 바닥면적 제한 확대			
12.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허용 업종 완화			
13. 벤처집적시설내 공장등록 면적 확대			
14. 반월 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내 행위제한 완화			
15. 문화재 발굴에 따른 보존지역의 용적률 완화			
16. 산지전용시 ‘계획상의 도로’ 공동사용 허용			

17.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사유 확대			
18. 보안림 해제사유 확대			
19. 공장설립지원센터의 One-Stop 서비스를 위한 재정지원			
III. 인력 및 산업안전 제도개선(17개)			
1. 외국인 고급기술인력을 위한 국적취득절차 간소화			
2. 외국인력 도입절차상 전자사증 적용대상 송출국가 확대			
3. 외국인 근로자 출국에 따른 근로공백 최소화			
4. 외국인력 Pool DB 정보에 대한 관리 개선			
5. 산업단지내 직장보육시설 지원 요건 완화			
6.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기숙사 포함			
7. 중소기업 재직 공고 졸업생에 대한 입영연기기간 연장			
8. 청년 실업자 대상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시행기간 연장			
9.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확충			
10. 산재승인 결정시 근로자의 과거 상병에 대한 관리개선			
11.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산업안전성능 검사제도 개선			

12. 산재예방기관 운영에 대한 사업주 참여 확대			
13. CLEAN 사업의 「지역별 목표 할당제」 개선			
14. 외국인근로자 사후관리 개선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확충			
15. 장기 재직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개선			
16.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 사업 지원대상 확대			
17. 구직자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정보제공 강화			
IV. 기업과세 합리화(24개)			
1. 기술지주회사의 배당수익금액 익금불산입율 상향조정			
2.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대학교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3.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주식 소유한도 예외 인정			
4.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펀드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5.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			
6. 벤처 창업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7. 항공화물 유치 활성화를 위한 재수출 면세 대상 확대			
8. 관세 가격신고제도 간소화를 통한 물류흐름 개선			
9. 공장 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범위 확대			

10. 연구개발용품 관세 감면 범위 확대			
11. 유상으로 일시수입 되는 금형에 대한 관세 면세			
12.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 비용 손금산입			
13.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허용			
14.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 확대			
15.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16.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별회사 범위 축소			
17.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를 면세 사업전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18. 하자물품 보세공장 재반입시 관세 환급제한 완화			
19.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에 대한 투자손실 인정 범위 확대			
20. 사업자등록 처리기간 단축			
21. 「보세공장 원료과세」 신청절차 개선			
22. 법인세 신고기한의 단순화			
23. 특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절차 간소화			
24.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 기준 수용			

V. 물류 인프라 구축(6개)

1. 모듈 트레일러의 운행방안 마련			
2. 물류시설 캐노피에 대한 규제 합리화			
3. 항만공사 사업용토지 보유세경감을 통한 물류비용 증가요인 해소			
4.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절차 합리화			
5. 인천공항물류단지의 차량통행 규제 개선			
6. 항만하역 작업시 정시간외 물품 취급통보 의무 폐지			
VI. 환경규제 개선(6개)			
1. 반도체 기존공장의 구리공정 전환 허용			
2.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선			
3.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선			
4.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			
5. 건설폐기물 처리 신고 중복 개선			
6.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요구되는 매출허용기준 조정			
VII. 기타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지원방안(16개)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기간 연장			
2. 대불산업단지내 전기의 순간정전 방지			
3. 기업의 자연재해 대비 시스템 구축방안 강구			

4. 불합리한 수돗물 공급조건 개선			
5.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에 대한 출총제 예외 인정			
6. 기술우위 SW 개발자 우대를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			
7. SW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개선			
8. 윈도우 비스타 문제해결 비용의 과도한 IT업계 전가 방지			
9.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시 면허세 비과세			
10. 중소기업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R&D 자금 지원			
1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설연구소 설립신고 허용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조정제도 개선			
13. 컨설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연계시스템 구축			
14. KS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비용 부담 완화			
15. 기술이전시(정부연구소→기업) 경상기술료 방식 활성화			
16. 기업의 R&D과제를 위한 신규인력 채용시 내부인건비 지급기준 명확화			
VIII. 기업법제 선진화(7개)			
1. 도산절차상 신규지원자금에 대한 우선순위 인정			
2.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 Rule)			

3.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			
4. 신탁법상 신탁대상을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5. 수탁자의 자기집행 원칙 폐지			
6. 복수 수익자간 이해상충 해결규정 도입			
7.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담보제도 개선			